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참조17)

2021. 2. 4.(목) 10:00

본 회 의 장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임정미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시의회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9조제3항 및 제39조의2 중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김선임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가게 등 소상공인 · 자영업 업소에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 주는 ‘선결제 캠페인’에 기초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전국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월 26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제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제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역학조사관 신설 등 긴급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증가에 따른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기병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 안 제2조 제3호 중

“체육관련단체” 를 “체육단체” 로

- 안 제6조 제1항 중

“성남시체육회” 를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로

- 안 제6조 제2항 중

“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에 따른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 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직장운동부에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복지 구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법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 상 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정책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제기관·단체 등에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운영 근거와 조사 또는 연구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조정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관 선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 4. 30.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태평4동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박은미 의원님 등 서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로

-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활동을 할 수 있다.” 를 “활동을 해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중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을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정봉규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남용삼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20조의2제2항 중

“민간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응 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과

관계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용자시 조합의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조합사업비 용자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용자 상환기간을 조합사업비 용자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 중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최종성, 안광림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해당 건축주에게 한시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위법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을

“위반건축물” 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최현백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 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면 경제성(B/C)이 저조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정부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연장, 트램사업 관련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마련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트램의 혼용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편성한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설정하고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김선임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부설주차장)의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했을때
확보 해야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1/2

범위내) 하여 철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소형 위주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중대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됨으로써 SUV 등 대형 차량을 소유한 주민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4조의2제2항 중
“설치하여야” 를 “설치해야”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임정미 의원 등 서른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나.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전사고를”을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로

안) 제4조제2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제2호 중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를
“이 경우에는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

안) 제7조 본문 중

“지방 출자·출연기관” 을 삭제

안) 제7조제1호 중

“전문 인력양성” 을 “전문 인력 양성” 으로

안) 제7조제2호 중

“국내·외 행사의 개최” 를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물품 배부” 로

안) 제7조제7호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안) 제12조제3호 를 제4호 로 하며,

안) 제12조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

으로 위와 같이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안광환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신흥동 영장산 일대
1,200호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영장산의 사유지를 LH에 매각하지 말고, 콘크리트 숲이 가득찬 수정구에서 주민들이 휴식공간, 산책할 수 있는 영장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는 동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라는 규정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결 결과 [불채택] 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 준수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 취지와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에 한하여 용적률 상한 적용 산식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호 근